

경영안정자금 용자대상

(제8조제2항 관련)

지 원 대 상	선 정 요 건	용 자 범 위
1. 제조업 영위자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이고 용자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	1회전 소요 경영안정자금 (최근 재무제표 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연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
2. 전략산업 영위자	중소기업청장이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전략산업 영위자	1회전 소요 경영안정자금 (최근 재무제표 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연간 매출액의 1/2 또는 최근 6개월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
3.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업체	1회전 소요 경영안정자금 (최근 재무제표 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연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
4.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5. 서울형산업 영위자	패션·디자인·애니메이션·소프트웨어·문화관광상품산업, 벤처기업, 국제회의기획업 영위자	
6. 창업기업	창업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중소기업	
7.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1회전 소요 경영안정자금 (최근 재무제표 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연간 매출액이나 추정매출액의 1/2 또는 최근 6개월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
8.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업	
9. 중소기업연합체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연합체 중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업체	1회전 소요 경영안정자금 (최근 재무제표 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연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
10. 공동사업추진 중소기업 관련 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출연기관), 법인(공익법인,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관련 단체, 3개 이상의 중소기업 연합체	
11. 유통업, 건설업 영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소매 및 상품중개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1회전 소요 경영자금 (최근 재무제표 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연간 매출액의 1/6 또는 최근 2개월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

지 원 대 상	선 정 요 건	응 자 범 위
12. “Hi Seoul” 공동브랜드화사업 참여자	“Hi Seoul” 공동브랜드사업 참여자 또는 “Hi Seoul” 브랜드 인증사업 참여자	1회전 소요 경영안정자금 (최근 재무제표 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연간 매출액이나 추정매출액의 1/2 또는 최근 6개월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
1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영위자	서울지역 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 마을버스 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1회전 소요 경영안정자금 (최근 재무제표 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연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
14. 산업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영위자	산업개발진흥지구·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영위자	1회전 소요 경영안정자금 (최근 재무제표 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연간 매출액이나 추정매출액의 1/2 또는 최근 6개월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